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일자리지원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1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일자리지원과]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성서산업단지의 노후화, 영세화로 기술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피업종, 인력부족 중소기업 등의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4조의2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기피업종 및 인력부족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취업장려금,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세부 비용추계는 최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고용 관련 장려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 신규 취업자 25명을 대상으로 채용 후 3, 6, 9개월 고용유지 시 각 5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매년 비용으로 90백만원씩을 추계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은 지역산업의 인력수급 동향과 지원실태 등을 파악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31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4년 11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고용촉진과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4116
----------	----------

제출년월일: 2024. 11. 6.
제출자: 달서구청장
(일자리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지역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성서산업단지의 노후화, 영세화로 기술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피업종, 인력 부족 중소기업 등의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고용촉진 및 유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의 2)
 -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기피업종 및 인력부족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취업장려금,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사업과
 - 그 밖에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다. 예산조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4. 10. 11.~10. 31.) 결과: 의견 없음
 - 2) 행정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고용촉진 및 유지)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2. 기피업종, 인력부족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3.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사업
4. 그 밖에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제6조제2호 중 “제4조”를 “제4조, 제4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조의2(고용촉진 및 유지)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2. 기피업종, 인력부족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3.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사업 4. 그 밖에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4. (생략)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제4조, 제4조의2 ----- ----- 3. 4.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단위: 백만원)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년부터 연중
- 사업대상:
 - 참여기업: 달서구 소재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
 - 참 여 자: 달서구 거주 35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자
- 사업내용: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일자리 정책 소외계층(35~49세)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고용 관련 장려금 지원

2. 비용발생 요인: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채용장려금, 취업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비용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고용촉진 및 유지)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2025년부터 추진할 사업(5년)에 대한 비용 추계
- 나. 추계의 결과: 450백만원
 - 채용장려금(채용 3개월 경과 시 지급): 62.5백만원(0.5백만원×25개社×5년)
 - 취업장려금(취업 3개월 경과 시 지급): 62.5백만원(0.5백만원×25명×5년)
 - 고용유지장려금: 250백만원
 - 채용 후 6, 9개월 고용유지 시 지급: 125백만원(1백만원×25개社×5년)
 - 취업 후 6, 9개월 장기근속 시 지급: 125백만원(1백만원×25명×5년)
 -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75백만원(15백만원×5년)
- 다. 재원조달방안: 구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90	90	90	90	90	450
채용장려금	12.5	12.5	12.5	12.5	12.5	62.5
취업장려금	12.5	12.5	12.5	12.5	12.5	62.5
고용유지장려금	50	50	50	50	50	250
부대비용 (홍보비, 운영비 등)	15	15	15	15	15	75
재원조달	90	90	90	90	90	450
구 비	90	90	90	90	90	450

6. 작성자: 기획경제국 일자리지원과장 황운섭

관계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4. 1. 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단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